

입법 · 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I.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1.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5

II. 법령 해석 사례

1.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11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15

III.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21
2. 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관련) 23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27

차 례

V.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37
2. 「조세특례제한법」 38

□ 환경복지위원회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40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40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 농산업경제위원회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42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43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4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시행령」 46
2. 「평생교육법」 47

차 례

【 재 정 분 야 】

VI. 재정 동향

1.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53
2.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55
3. 기후위기 시대, 지역 중심의 가뭄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58
4.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한가?(한국교육개발원) 66
5.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현대경제연구원) 70

VII. 타 시·도 최근 시책

1. 지자체 최초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경기도) 75
2. 충남에 세계 첫 ‘OLED 8.6세대 라인’ 구축(충청남도) 76
3. 강원도 청년창업 특별시대 연다(강원도) 78
4. ‘지능형영상감지시스템’ 설치 추진(전라남도) 80
5. 전국 최초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 도입(서울시교육청) 81

VIII.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자치분권위원회 운영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행정안전위) 85
2.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 확보 필요(국방위) 88
3. AI교육기반 조성 사업의 국고 지원 재검토 필요(교육위) 90

IX.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KBS 수신료 부과 관련 95

【 입 법 분 야 】

I.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정명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

발의연월일: 2023. 3. 17.

발 의 자: 정명국 · 이용기 · 송대운
이재경 · 이호성 · 이한영
김영삼 · 송활섭 · 송인석
이상래 · 이병철 · 김선광
김진오 · 이중호 · 안경자
조원휘 · 김민숙 의원(17명)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마.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3조(위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이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03. 03.

발의의원 : 이재화, 김대현, 김재용,
김정옥, 김태우, 손한국,
이재숙, 이태손, 육정미,
조경구, 전경원 의원(11명)

1. 제안이유

현재 우리사회가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디지털을 통한 각종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높이는 교육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란 디지털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생 교육 지원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교재 등의 개발 및 지원
4.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력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교육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 법령 해석 사례

1.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법제처-22-0641, 2023. 3. 20.]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인 농막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될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제4호), 건축물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제3호라목)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농막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재배농지”라 함)의 지상에 설치하는 정화조(농막의 일부로서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옥외에 설치하는 정화조를 말하며, 이하 “정화조”라 함)가 있는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3. 이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농지법령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각주: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47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인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경우 그 부지가 “농지”로 인정되고, 그 설치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각주: 「농지법」 제2조제7호 참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막을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바, 농막의 의미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는 재배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호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나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에서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 입법취지가 방만한 농막의 설치로 인한 ‘재배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4. 4.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같은 호의 위임 근거 규정인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라목에서는 그 부지를 농지로 보는 시설로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농막’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농막 중 일부 시설의 부지라고 해서 농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취지 및 상위법령의 문언·체계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 등이 없이 재배농지의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면적’은 전체로서의 농막이 차지하는 재배농지의 면적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은 본래 주거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수세식 변기 및 그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는 농막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농막의 일부로서 설치가 허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인데(각주: 농지법령에서는 농막에 수세식 변기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농지업무편람(2023년)에서는 농막의 시설로서 정화조를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제4호에서는 화장실을 농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이나 국가 등이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배농지의 지상에 농막의 일부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배농지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은 화장실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농지 전용 없이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를 판단할 때 정화조가 차지하고 있는 재배농지의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막을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막에 데크, 정화조 등 부대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는 재배농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농지업무편람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정화조의 경우에도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에는 그 면적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배포하여 온(각주: 2020년(농막의 연면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대면적 포함하도록 규정) 및 2023년(농막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정화조 명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된 것이고, 농지법령에서는 농막의 연면적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기준이나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여 농막의 연면적 산정 시 이 사안 정화조의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서 모두 제외시킬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재배농지를 차지하는 농막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려는 「농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령, 나아가 건축법령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농막의 인정 기준, 규모 및 면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23-0193, 2023. 4. 4.]

1. 질의요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함)을 각각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및 실시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관·학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관”은 “종사자”에, “학교”는 “교직원”에 각각 대응된다거나 학교의 경우 그 종사자를 결핵검진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학교의 종사자도 교직원과 함께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대상자와 사업주의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1호로 「결핵예방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서(각주: 2016. 2. 3. 법률 제139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된 「결핵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감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유치원·학교 등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에게는 결핵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이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결과(각주: 2014. 12. 31. 의안번호 제1913506호로 발의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교사 등 관련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유치원에서 면역 취약계층인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학교·유치원의 종사자까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이 학교·유치원에서 면역 취약계층인 유아·

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지만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결핵검진등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결핵예방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채용된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그 교직원의 근무예정기간에 관계없이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교직원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및 실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결핵예방법령에서는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그 신규채용자를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예정된 근로기간이 짧은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학교·유치원에서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데, 예정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결핵예방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1호로 「결핵예방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학교·유치원 등의 교직원·종사자까지로 결핵검사등의 실시 대상자를 확대하여 유아·청소년 등 면역취약자를 결핵에서 보호하려는 개정취지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의견23-0053, 2023. 3. 31.]

【질의요지】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의견】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7조제7호에서는 전라북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위 전라북도 조례 외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익산시 조례에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회신 의견 17-0196 참조).

그렇다면, 전라북도지사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조례 제7조제7호는 ‘익산시’가 아닌 ‘전라북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익산시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농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때 “조례”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인 익산시의 조례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회신 의견 17-0196 참조).

따라서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관련)

[법제처, 의견23-0043, 2023. 4. 3.]

【질의요지】

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함(「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즉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제1호),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제8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제1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특정인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동어린이집의 원장에게는 일정한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협동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제220호)

□ 배경

-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서비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데이터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 유럽연합(이하 EU)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 EU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EU 차원의 공통규칙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는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유럽 데이터 전략¹⁾을 2020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데이터법(안)」 등 여러 입법을 추진 중이다.
- 우리나라 현행 입법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미비하며, 데이터 거래와 재사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 또는 지식 재산침해 등 권리충돌 문제들에 관한 지적이 있다. 이에 EU의 입법례가 데이터 경제가치의 증대를 위한 데이터의 재사용 촉진 및 민간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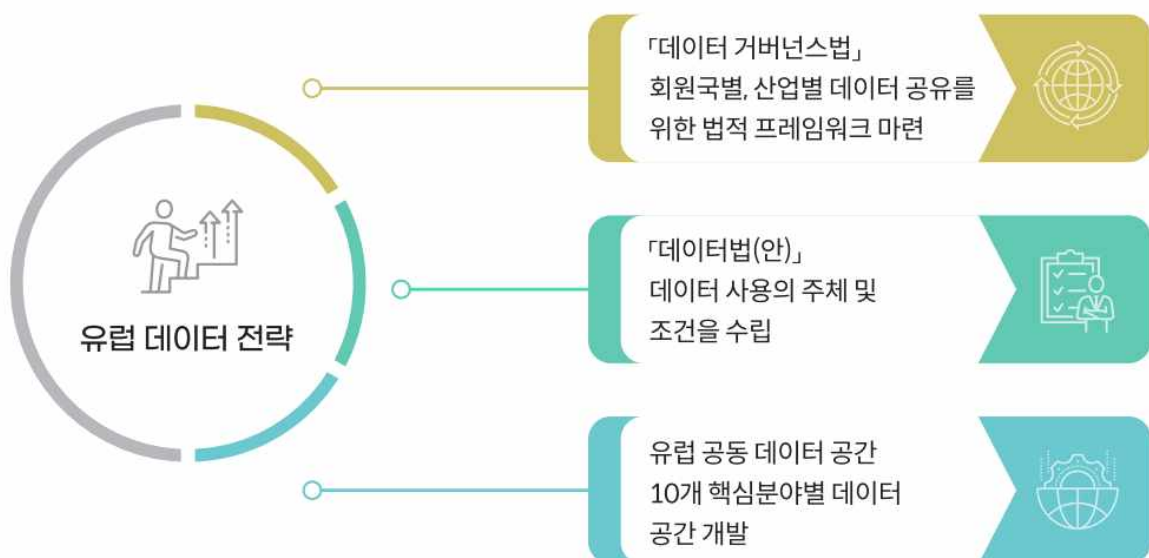
※ 관련 법률: 「공공데이터법」(제17344호), 「데이터산업법」(제18475호), 「산업디지털전환법」(제18692호)

□ 도입

-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데이터 전략’을 구체화하는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2022년 6월에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제정하여 2023년 9월 24일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데이터법(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법」이 공공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데이터법(안)」은 민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 EU는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연인 또는 법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데이터 중개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였고 ‘데이터 이타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 EU의 「데이터법(안)」은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관계를 법제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데이터의 공정한 배분 및 EU회원국 간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EU 데이터 전략 추진 현황



※ 출처: EU집행위원회 데이터법 Factsheet 2022년 2월 23일

□ 「데이터 거버넌스법」

1. 입법배경 및 목표

-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데이터 관련 이슈에 대해 EU회원국이 회원국별로 법제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디지털 단일시장이 파편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럽단일시장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EU는 이 법을 통해 역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규칙을 수립하고 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사용(re-use)촉진
 - EU는 오픈데이터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사용을 이미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범주의 데이터, 즉, 영업기밀, 비밀로 보호되는 통계자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에 따라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는 연구·혁신 활동을 위해서도 데이터에 대한 재사용이 어렵다.
 - 「데이터 거버넌스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접근방식과 더불어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²⁾을 사용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호되는 유형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앞서 언급된 특정 범주의 데이터를 EU 전역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폭 넓은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제5조)
-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
 - 데이터 보유자(holder)와 데이터 사용자(user)로부터 독립된 존재인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업자(또는 데이터 중개자)는 데이터를 집계·교환하며, 여러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³⁾ 제공을 위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데이터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제12조)

표 1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

- 데이터·메타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데이터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법인에 배치
- 데이터 접근 절차의 공정성·투명성·비차별성 보장
- 상호운용성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를 필요에 의해 특정 형식으로 변환
- 당사자들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하여 사기·오남용 방지 절차 구축
- 서비스 제공의 합리적 연속성 보장
- 불법적인 비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조치 마련
- 비개인정보의 저장 및 전송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 보장
- 경쟁에 관한 EU 및 국내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마련
- 잠재적 데이터 사용 및 그러한 사용에 따른 표준 약관 제공
-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및 법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관할기관 명시

○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

- ‘데이터 이타주의’란 정보주체 및 데이터 보유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별도의 보상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거나 기타 데이터 보유자가 자신의 비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16호)
- EU는 데이터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역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풀(data pool)의 출현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 공인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은 투명성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담당 관할당국에 전송하여야 한다(제20조제2항)

표 2

‘공인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 연간 활동보고서가 담아야 할 내용

- | | |
|-----|--|
| (a) | • ‘공인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의 활동에 관한 정보 |
| (b) | • 특정 회계연도 중에 데이터를 수집한 공공이익의 목적을 홍보한 방식에 대한 설명 |
| (c) | • 자신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의 목록 |
| (d) | • ‘공인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이 허용한 데이터 처리의 결과물에 대한 요약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 (e) | • ‘공인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특히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얻은 모든 수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출에 대한 정보 |

□ 「데이터법(안)」

1. 입법 배경 및 목표

- 산업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운데 데이터의 사용권한을 사물인터넷(IoT) 제품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는 관행이 팽배하다. 이에 EU는 「데이터법(안)」을 통해 데이터 공유조건을 규정하고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데이터 시장에서 약자인 제품 사용자와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유를 활성화하여 공정한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림 2 EU의 중장기 데이터 시장 전망(2021-2030(예상치))



※ 출처: 2019-2021 European Data Market Study(IDC, 2022년 2월)

※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 데이터 접근 주체

- ‘제품 사용자’란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품을 소유 또는 임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품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므로 제품 사용자는 곧 데이터 생성자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제품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 단,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된다(제4조제6항)

- ‘데이터 보유자’란 관련 EU법 또는 EU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특정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거나 비개인정보 데이터의 경우,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기술 설계를 통해 특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제2조제6호)
- ‘데이터 수신자’란 제품이나 관련 서비스의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얻기 위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기술적 보호조치⁴⁾를 침해하거나 기술적인 격차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제5조제4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제공자⁵⁾’란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데이터 처리서비스제공자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제23조)

표 3 「데이터법(안)」의 주요 주체별 권리와 의무

구분	제품 사용자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수신자
권리	• 데이터 접근권 및 이동권 • 데이터 수신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중지 및 삭제권	• 데이터 활용권 • 비용 청구권 • 신원확인 요구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권	•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고 활용할 권리
의무	• 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보유자의 출처와 경쟁하는 제품의 개발에 이용 금지	• 데이터 접근 및 제공 의무 • 침해적 데이터 활용 금지 • 데이터 보호 의무	• 데이터 최소화 원칙 준수 의무 • 비용 지급 의무 • 데이터 보유자 이익 보호 의무

3. 데이터 이동권

- 데이터 이동권이란 제품 사용자(데이터 생성자)나 데이터 보유자가 계약 관계를 통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 제품 사용자(A), 제품제조사(B), 제품 수리회사(C)를 가정할 때, A는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의 수리를 C에 맡기기 위해 B에게

그간 생성된 데이터를 C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데이터에 무상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B와 C간 데이터 이동은 계약관계로 결정되며 B는 C에게 데이터 이동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

- 데이터 보유자는 공공비상사태⁶⁾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정 데이터를 무상으로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c호).
 - 공공비상사태의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 법률에 명시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시가로 구입할 수 없고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 법률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보유자 또는 기타 기업의 행정적 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 시사점

- 우리나라에는 공공과 민간을 통합하여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및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EU의 「데이터 거버넌스법」으로부터 데이터 재사용 및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요건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의 ‘데이터 이타주의’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우리나라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 생산자’라는 용어를,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누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생성하는지에 대해 의미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⁷⁾.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시, ‘제품 사용자’,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수신자’라는 명확한 개념을 확립한 EU의 「데이터법(안)」을 참고할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3항은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라는 언급이 있을 뿐,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EU의 「데이터법(안)」의 관련 규정을 참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비개인정보에서부터 자발적인 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이동권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 1) '유럽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형성, 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별 데이터 공간 구축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 2)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예로는 익명처리, 가명처리, 차등 프라이버시, 일반화, 범주화 처리 및 무작위화가 있다.
- 3) 데이터 공유서비스는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사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 정보주체와 데이터 사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 정보주체 또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계약·합의·협상 등의 절차와 요건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협동조합 서비스 등 크게 세가지 서비스로 구분된다(제9조)
- 4) 기술적보호조치에는 가명화 및 암호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이나 복제에 수반되는 가용한 최신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 5)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IT 리소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대상은 서버, 플랫폼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6) '공공비상사태'란 생활 조건이나 경제적 안정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EU 또는 EU회원국의 경제적 자산의 상당한 가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한다(제2조제10호)
- 7) 오병철, "유럽연합 데이터법(EU Data Act) 초안 및 그 시사점",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 2022, p. 508참조

V.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04호, 2023. 4. 17., 제정]

◇ 제정이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제2조)

-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법제처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제4조 및 제5조)

-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위원이 이를 대행하도록 함.
-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함.

다. 전북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1) 전북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법제처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조정실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 2) 전북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북특별자치도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
- 2)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안 제9조 및 제10조)

-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28호, 2023. 4.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 3)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4)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1조의15)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3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제126조의2)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함.

□ 환경복지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 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칭하는 용어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 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으로 변경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4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23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칭하는 용어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제정]

◇ 제정이유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 · 광역 ·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다. 시장 ·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10조).
- 라. 시장 ·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주민 등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 ·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2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 ·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 사.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농촌공간정책 심의회를 각각 두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 아.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4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8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과 동일·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제정]

◇ 제정이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가. 모빌리티, 모빌리티 수단, 모빌리티 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5조).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제6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7조).
-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 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제11조 및 제1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제16조 및 제17조).

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제18조 및 제19조).

카.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3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7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해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기준과 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학에서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목이 연계·융합된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이 그 대학 외에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과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재 일부 대학에서 소단위 전공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이 9~12학점 정도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이 이수증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제12조의2 신설)

- 1) 대학에서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은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목이 연계·융합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그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상 확대(제20조)

대학은 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학 외에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기준 및 입학자격 등(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신설)

- 1)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한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고 개설 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등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해당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과를 자연과학, 공학 등에 속하는 과로 정하며,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함.

「평생교육법」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재 정 분 야 】

VI. 재정 동향

1.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현안과 과제/2023. 3.)-

□ 개 요

-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민관협력 기반의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 및 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관광 시장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다.
-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이번 정부의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목적하는 만큼의 관광 시장 수요 진작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내수 침체가 완화되면서 경제 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단기 효과 분석 결과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2023년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GDP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져오는 총 생산유발액은 11조 2,7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7조 2,7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8,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200억 원으로 분석된다.

고용 효과를 보면 총 취업유발인원은 11만 7,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7만 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는 4만 3,800명에 달한다.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관광산업 내 단기 효과 >

구 분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방한관광	합계
소비지출액 증가분	6조 500억 원	3조 2,400억 원	9조 2,900억 원
생산유발액	7조 2,700억 원	4조 원	11조 2,7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8,800억 원	1조 7,200억 원	4조 6,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만 4,100명	4만 3,800명	11만 7,900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관광산업 이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단기효과(관광산업) 및 중장기효과(관광산업 외)를 합하면, 생산유발액 17조 9,6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7조 3,600억 원, 취업유발인원 17만 2,800명으로 분석된다.
- 이 중에서 중장기 효과만 살펴 보면, 우선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장기 생산유발효과(관광산업 외)는 6조 6,9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4,1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2조 2,800억 원이다.
- 또한,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장기 부가가치유발효과(관광산업 외)는 총 2조 7,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9,800억 원이다.
- 한편, 관광산업 이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유발인원은 5만 4,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4만 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1만 800명에 달한다.

□ 시사점

- 단기적으로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중장기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 회복으로 글로벌 관광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둘째,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 주력 산업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산업 발전 전력 마련이 필요하다.

2.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3. 3.)-

□ 주제의 쟁점 및 필요성

○ 문제 제기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지방행정환경이 다양화 복잡화 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방의회의 확대된 권한·역할에 상응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제도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이에 적합한 수준의 의회 역량 확보를 위한 적정 의정비 체계의 검토 필요
- 유급제 도입 이후 개정 지방자치법(2005.8.4. 일부개정, 법률 제7670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2008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 라인이 제시됨

○ 주요 쟁점 사항

- 의정비 계산식은 복잡한 회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획일화되어 있는 계산식으로 인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월정수당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은 아직도 의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 의정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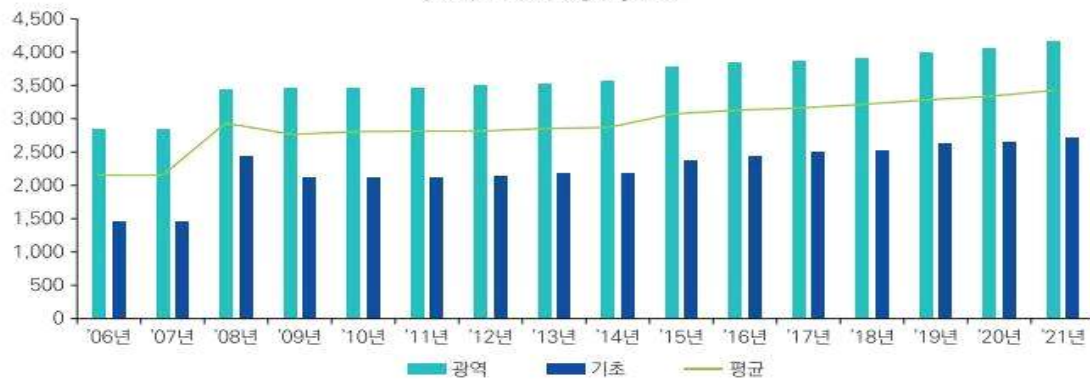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21년까지 15년 동안 월정수당은 연평균 3.1% 증가하였고 광역의회 월정수당은 2.5% 증가, 기초의회 월정수당은 4.3% 증가
-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36.3%의 증가가 있었고,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5.3%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후 매년 평균 1% 후반대의 증가세를 보임

〈표〉 연도별 월정수당 변화 내역

(단위 : 만 원, %)

구분	'06년	'10년	'14년	'16년	'18년	'20년	'21년	증감률
광역	2,884	3,503	3,589	3,872	3,943	4,090	4,182	2.5%
기초	1,468	2,124	2,199	2,447	2,538	2,676	2,742	4.3%
평균	2,176	2,814	2,894	3,160	3,241	3,383	3,462	3.1%

〈그림〉 연도별 월정수당 변화



○ 의정비 결정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정 활동 실적과 연계된 분석이 필요함. 즉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전문성, 성과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결정에 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으로 권고사항(예를 들면, 지역의 재정수준, 행정수요, 유형,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만을 제시함.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월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고 기준에도 지역마다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같이

-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어서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즉, 월정수당 산정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는 의정비 책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민의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하거나 주변 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월정수당비 산정 기준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음

□ 의정비 제도개선의 대안

- 어느 수준이 적절한 의정비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기대어 도출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의정환경과 행정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한 직무 분석과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의정비 지급제도와 적정 의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즉,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 간에 대한 분석 또는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에 투입되는 업무량 및 직무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 지방의원의 개별적 업무량 측정 기준으로는 먼저 지방의원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방의원직의 수행 업무를 사전에 규정해야 함

3. 기후위기 시대, 지역 중심의 가뭄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 방안

-한국환경연구원(2023.2)-

1. 2022년 가뭄현황과 2023년 가뭄 전망

□ 2022년 우리나라 수문기상 상황

- 우리나라 2022년 강수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부지방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발생하였으나, 남부지방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의 강수량 발생
 - 61개 기상관측소 중 28개 지점에서 1년간 평년(1991~2020년) 대비 80% 이하의 강수량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광주(526mm), 완도(409mm), 남원(583mm) 관측소는 평년 대비 60% 이하의 강수량 기록
 - 기상학적 가뭄은 평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수량의 부족을 의미하며, SPI6* 분석 결과 총 61개 지점 중 31개 지점에서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
- *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의 약자로 관측지점별로 현재일까지의 6개월 누적 강수량과 과거 동일 기간의 강수량 분포와 비교하여 표준화한 지수
- 연속기상가뭄일수는 합천 285일, 거창 284일, 고흥 262일, 해남 261일, 장흥 260일, 남원 247일, 진주 192일, 완도 170일, 목포 165일, 광주 156일로 여름철부터 연속적인 기상학적 가뭄이 나타나고 있음
- 전국 생·공용수 공급에 활용되는 담수호의 저수율은 53.6%로 평년 54.0%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일부 저수지의 저수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
 - 한강, 낙동강, 금강유역의 담수호는 평년보다 저수율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인 반면, 낙동강 기타 수계 유역과 섬진강, 영산강 지역의 대다수 저수지는 매년 평년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저수 현황을 기록하고 있음
 - 주암댐과 연계하여 관리되는 수어댐과 평림댐 저수지는 용수공급 조정기준 중 경계 단계이며, 합천댐, 선암댐, 대암댐은 관심 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 용수공급 단계가 설정되지 않은 댐 중 섬진강댐(17.6%), 동북댐(27.4%), 대곡댐(29.2%), 사연댐(20.4%)은 매우 낮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광주·전남의 가뭄 현황과 원인

- 2022년 광주·전남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로 연초부터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인지되었으며, 11~12월에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었음

-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에 가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았으며, 장마철에도 충분한 강수량 및 저수율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홍수기인 7월과 8월에도 가뭄의 언론 노출이 많았음
- 가뭄을 키워드로 놓고 분석한 기사 건수 대비 ‘광주 가뭄’과 ‘전남 가뭄’은 꽤 높은 비중을 보이며, 11월과 12월 기준 전체 가뭄 분석 기사 건수의 약 56%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광주·전남 가뭄 관련한 연관어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는 ‘강수량’, ‘저수율’, ‘제한급수’, ‘식수원’, ‘농업용수’ 등이 연관성이 높은 단어로 분석됨
- 전남지역에서는 섬지역이 가장 큰 가뭄 피해를 겪고 있음. 실제로 가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완도군은 금일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4개 읍·면 5개 섬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임
- 광주의 생활용수 중 22만㎥/일과 28만㎥/일을 담당하는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2022년 12월 26일 기준 30% 밑으로 떨어짐
- 현재 광주·전남지역 가뭄의 주요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강수량과 담수용량의 부족으로 볼 수 있음

□ 2023년 가뭄 전망

- (강수량 전망) 계절 및 연 강수량 전망 결과 평년과 비슷하거나 작을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간에 가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상청 3개월 전망 결과 1~2월 전망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3월 전망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라니냐의 영향으로 봄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작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2년과 같이 연속적인 라니냐가 2023년에도 발생할 경우 초장기간의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 2023년 1월 9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뭄 지역은 유지되면서 경북, 경남, 충남 일부 지역까지 가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광주광역시, 전북 정읍시, 전남 완도군과 목포시 등이 경계 단계에 있으며, 주의 단계에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울주군, 합천군 등 일부 지역임

- 3개월 전망 결과에 따르면 가뭄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경북지역과 충남 서해안(태안군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II. 우리나라 주요 가뭄 피해 현황 및 대책

□ 연도별 가뭄 발생 지역 및 피해 현황 분석

-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가뭄’ 관련 기사 건수 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전반적인 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뭄 발생 패턴도 점차 짧아지는 추세임
- 가뭄 발생 기간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용수 공급 측면으로는 제한급수와 운반급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와 양식업 피해가 발생하였음
 - 1994~1995년 가뭄의 경우 경남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북, 전북, 충북, 충남 등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양식업을 비롯한 다수 어종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함
 - 2008~2009년 가뭄은 경남, 전남, 강원 지역에서 극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태백지역은 식수가 부족해지자 약 3개월 동안 1일 3시간 제한급수를 시행
 - 2014~2015년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경계’ 단계에 도달하여 금강 도수로 가동을 통한 생·공용수 공급, 급수체계 조정 등을 시행함

□ 주요 가뭄대책 및 시사점

-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가뭄에 대한 선제적·지역별 대응을 위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이행해 왔음
 - 지역별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가뭄이 주로 발생했던 지역에 국가(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대책이 지자체에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며,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자체 중심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가뭄 대응 효과를 높이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음
 - 전남 신안군은 상습가뭄지역으로 가뭄 장기화를 예측하고 사전대응을 위한 비상급수체계를 수립, 가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규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노후관로 정비, 송수관로 설치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였음
 - 지속적인 수원지 저수율·강우량 모니터링, 수원지 현장에서 개최한 이장단

회의를 통해 주민 동의 기반 생활용수 우선 활용, 적극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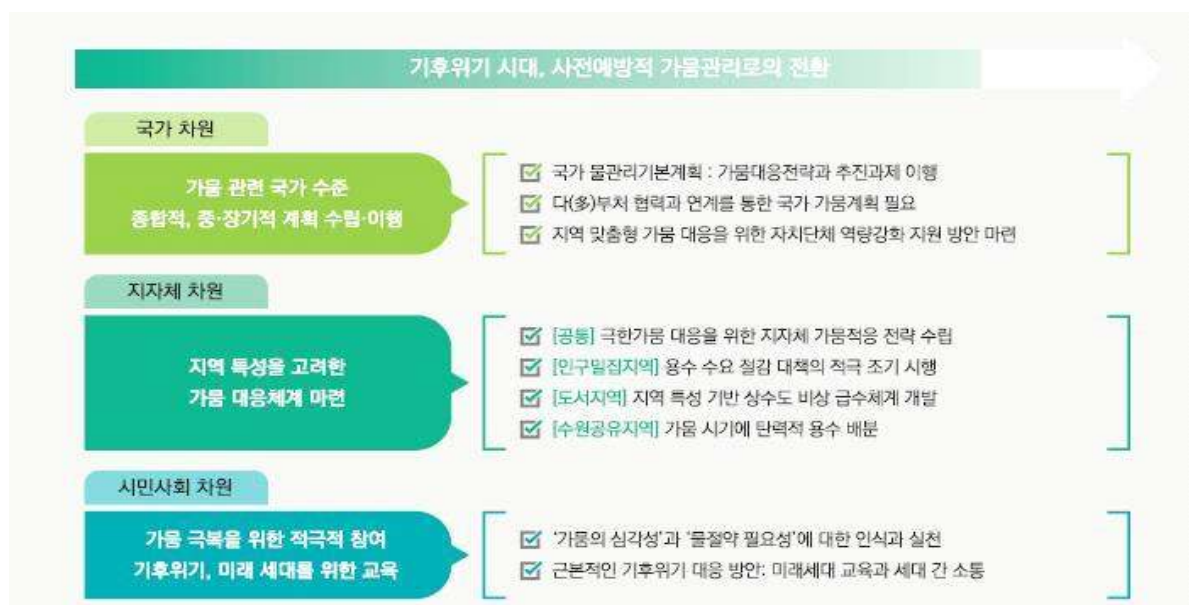
- 신안군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 중·장기적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주민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가뭄 해결을 위한 재난 대응이 아닌 가뭄 극복을 위한 선제 대응의 효과를 보여줌

- 가뭄이 2~3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추세로 주기가 짧아지고, 많은 국내외 문헌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심도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 수립 필요

III. 정책제언

□ 사전예방적 가뭄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시민의 역할과 주요과제

-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호주에서는 가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 가뭄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우리나라도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뭄 회복력 구축 방안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사전예방적 가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에 적합한 국가-지자체-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차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물관리 부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앞서 제시했던 국가 차원의

가뭄관리 방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제의 적극적 이행 필요

- 국가계획 내 수요관리 강화,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 중심 맞춤형 가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역량 강화 지원’ 과제 포함

○ (지자체 차원) 실제 가뭄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가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수자원법」상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자원의 개발·이용, 홍수 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과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가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시민사회 차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2006년 276L에서 2021년 302L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전국평균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은 점차 간극이 커져 현실화율은 72.9%로 매우 낮은 상황임. 이러한 낮은 수도요금이 물 절약을 유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함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 사용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물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이러한 제도가 당장의 가뭄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뭄 단계에 따라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체계 등을 통해 절수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뭄대책

○ 일반적인 가뭄대책은 크게 1) 용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2) 용수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용수 공급관리 방안은 기존 개발된 용수의 효율적 활용(댐-저수지 연계 운영 등)과 대체 수자원의 확보(지하 댐 개발, 하수 재이용 등)로 구분
- 용수 수요관리 방안은 공급 측면의 관리(노후 수도관 개량 등), 수요 측면의 관리(절수 설비·기기 설치, 물 사용량 표시제 등), 수요자 반응(제한 급수, 수도 요금체계 고도화 등)으로 구분
- 지역마다 용수 공급체계와 용수 수요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효과적인 가뭄대책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뭄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본고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물 공급 취약지역, 지자체 간 수원 공유지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함.

가. 인구밀집지역 용수 수요 절감 대책의 적극 조기 시행

- 생활용수 수요가 많은 대도시 근처의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의 양이 충분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 장기적인 가뭄이 발생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용수 절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임
- 실제 광주지역에서 나오는 기사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물 생산량을 20% 정도 저감하여 2023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6.9%를 절감하고 있는 추세로 2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용수 수요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함
 - 대도시 지역은 가뭄 초기 단계부터 물 절약을 시행하고, 가뭄 발생기간 동안 일부 제한급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가뭄 예·경보 발령지역의 물 사용량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생업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을 고려하여 가뭄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보급·확대하고 가뭄피해지역주민 생업을 보장해야 함.

나. (물 공급 취약지역) 비상 급수체계 개발

- 물 공급 취약지역은 크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미급수지역과

도서지역 등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러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추가적인 외부의 용수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임

- 비상시 섬지역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과 급수운반 장비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기존 저수지 등을 사전에 준설하거나 저수 용량을 증대하는 사업, 지하댐 사전 개발 등을 지역 여건에 맞춰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7%로 약 123만 명 (2.3%)은 여전히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우물이나 샘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음
- 미급수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미급수지역의 가뭄 취약성 등 종합평가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자원 다변화 대책을 수립해야 함

다. (지자체 간 수원 공유지역) 가뭄 시 탄력적 용수 배분 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물 이용 특성상 수자원을 공급하는 지역과 공급받는 지역의 차이가 발생함, 동일 유역 내 수원을 공유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형태로 유역 간 물 이동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미래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유역 내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연계하여 기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상 지자체별 하천과 댐의 기득물량이 존재하지만, 가뭄 발생 시에 지자체 간 기득물량 조정을 통한 탄력적인 물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수질에 민감하지 않은 산업의 공업용수 공급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와 중수 이용을 장려하는 등 기득 용수의 생활용수로의 전환 필요
 - 효율적인 용수 활용을 위한 유역 내 댐-저수지-하천 연계 체계 마련과 유역 간 물 공급체계 마련 필요

IV. 맺음말

- 2023년 1월 13일 우리나라 전역에 큰비가 내렸고, 주암댐 유역 평균 49.5mm의 강우가 발생하였음. 이 비로 1월 13~16일간 740만㎥의 물이 유입되었으나, 저수율은 28.0%에서 29.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러한 상황이라면 2023년 가뭄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2022년처럼 마른장마가 지속된다면 물 부족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국민의 적극적 물 절약 실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이번 가뭄이 해갈되더라도, 향후 이러한 가뭄이 언제든, 어느 지역에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가 가뭄의 사전예방적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 나가야 함

4.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Brief/2023. 3.)-

□ 들어가는 말

-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및 투자 규모 확대 노력을 계기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지금까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당위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과거 산업발전기에는 국가 성장을 위한 대학의 인적 자원 양성 기능이 주효했고, 근래에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아래 지역개발이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임
대학의 역할과 기능, 유익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도 해당하므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필요하고 또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음
-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해 국가가 왜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가와 국·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에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임. 따라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입장 및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학·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찬·반 근거

- 찬성 근거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규범적 속성’, ‘외부효과 및 투자재로서의 가치’, ‘소득불평등 완화 기능’, ‘공공성 측면 및 공공재로서 투자의 당위성’, ‘법적 근거 및 교육법 체계’, ‘국제적 추세 및 정부의 역할과 책무’, ‘고등교육의 가치제, 보편제, 필수재로서의 특성’, ‘교육권(대학교육 기회) 보장’, ‘사회적 변화 및 고등교육 수요 대응’ 등의 근거가 확인됨(<표 1참조>)

〈표 1〉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찬성 근거

구분	주요 내용
대학의 규범적 속성	인재 양성 및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합의
외부효과 및 투자재로서의 가치	개인의 편익 증진 뿐 아니라 국가 및 다른 구성원에 대한 간접 편익
소득불평등 완화 기능	공적 투자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
공공성 측면 및 공공재로서 투자의 당위성	고등교육의 공공적 기능 및 속성과 공공성 개념 확장 추세
법적 근거 및 교육법 체계	현행법 내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 근거 규정 및 공교육을 전제로 한 법체계와 법 적용
국제적 추세 및 정부의 역할·책무	OECD 주요국 등 고등교육 분야 정부부담 공교육비 투자 확대
고등교육의 가치재, 보편재, 필수재로서의 특성	국가의 개입을 요하는 가치재 특성 및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 진입
교육권(대학교육 기회) 보장	대학교육은 법률상 권리이자 사회적 기본권이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필요
사회적 변화 및 고등교육 수요 등에 대응	고등교육의 다변화 모색 및 내·외부 수요 충족

○ 반대 근거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과잉교육 이슈’,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견’,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 ‘사유재(사적 재화)에 해당’, ‘고등교육단계의 가치재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의 근거가 확인됨(〈표 2참조〉)

〈표 2〉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반대(신중 검토) 근거

구분	주요 내용
과잉교육 이슈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및 취업률과 산업계와의 미스매치
외부효과에 대한 이견	투자의 추가적 외부효과 불확실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고등교육투자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거나 불평등도를 높일 가능성
사유재(사적 재화)에 해당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등 공공재 특성 부족
가치재 여부에 대한 이견	교육은 가치재 성격을 갖고 있으나 모든 단계의 교육이 해당하는지 의문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경우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의견

○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전문가들이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함(2022.11.).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으며, 교육학·고등교육전문가 및 일반 행정학·경제학 분야 전문가, 대학의 전·현직 보직교수, 정부부처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를 포함함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성의 근거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일부에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및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 기준 등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나 단서 조항 의견 등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음
- 전문가들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첫째, ‘대학재정 실태 기반론: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구조’, 둘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론: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 셋째, ‘고등교육의 외부효과론: 대학교육의 역할 및 기여도’, 넷째, ‘고등교육의 보편적 성격론: 대학교육 보편화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다섯째, ‘법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한 당위론: 법적 의무 및 국가적 책임 이행’ 임(<표 3> 참조).

〈표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및 이유

구분	주요 내용
대학재정 실태 기반 현실론	▶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구조 - 등록금 동결 등 정부의 가격통제와 개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당위성 - 수익자부담원칙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반대급부로서 재정투자 필요 - 대학의 재정확충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는 필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론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 - 대학 특성화 도모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주요 선진국 대비 지원 미비는 국제 경쟁력 약화 및 교육의 질 저하 초래 - 초·중등교육비와의 투자 격차 우려 및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를 통한 고등교육 혁신 뒷받침 - 교육 및 연구 부실화 등은 학생과 기업 등 사회에 직·간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등교육 기능 재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필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론	▶ 대학교육의 역할 및 기여도 -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의 중요성 -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역발전 견인 역할 -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 - 대학의 지식 창출과 전달은 충분한 자원 가치
고등교육의 보편적 성격론	▶ 대학교육 보편화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 고금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대학교육 보편화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 소득에 따른 계층 간 대학교육의 형평성 증진
법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한 당위론	▶ 법적 의무 및 국가적 책임 이행 -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정투자 - 국공립대학에 대한 설립자, 사립대학에 대한 조성자로서 국가의 책임 - 관련법령에 명시된 고등교육재정투자 이행 - 우수한 인재 양성은 국가적 책무 - 법체계상 고등교육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공육에 해당

□ 정책 제언

-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더 이상 쟁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재정 투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일례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은 대학재정투자의 필요성 논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이자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을 지탱하는 축으로 작동함.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것은 오늘날 대학이 처한 실제적 상황과 원인에 대한 진단,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임
- 반값등록금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는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담론의 지평을 단순 재정 보전 차원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사업에 치중한 대학재정투자 방식을 다각화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관리 제도 및 장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현대경제연구원/2023. 3.)-

□ 개 요

- 지난 3월 15일 정부는 내수 진작 및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외수 부진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는 등 내수 부분 활력 제고가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수요 진작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 명,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활용해 1일 1인당 8만 5,830원, 소비지출 구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로 가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를 이용해 전체 거시경제적 효과 및 경로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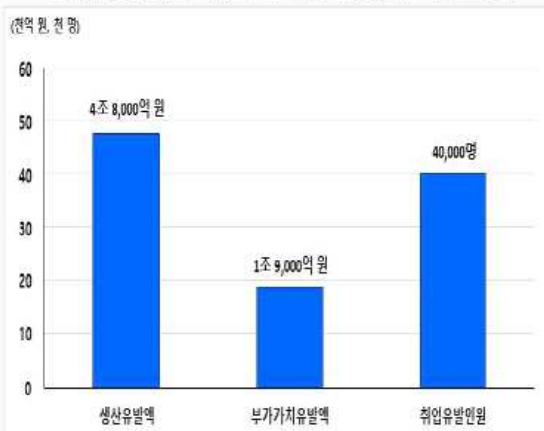
□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거시경제적 효과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
- 경로별 경제적 효과
 - 목적별 소비지출의 경로별 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 원(전체 소비지출액 중 37.3%)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 9,400억 원(총효과대비 40.6%),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400억 원(동 39.4%),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 7,000명(동 4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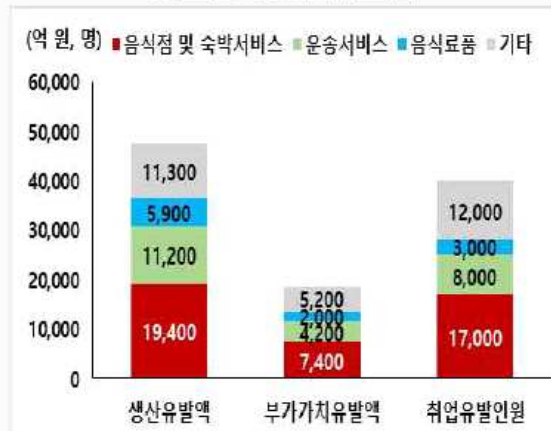
- 동 운송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6,300억 원(동 26.1%)으로 이의 생산유발액은 약 1조 1,200억 원(동 23.4%),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4,200억 원(동 22.3%), 취업유발인원은 약 8,000명(동 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음식료품 소비지출액은 약 2,700억 원(11.2%)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5,900억 원(동 12.3%),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000억 원(10.6%), 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명(동 7.5%)으로 추산된다.
-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파급 경로를 통해서도 약 6,100억 원(동 25.3%)의 소비지출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체공휴일 1일의 거시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경로별 경제적 효과 >



□ 시사점

-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첫째,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체공휴일 지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셋째**, 대체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VII. 타 시·도 최근 시책

1. 지자체 최초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경기도(2023. 4. 2.)-

- 도민을 위해 GSEEK에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은 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제공

-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인재개발원 누리집에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 지식(GSEEK)에서 제공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가족 다양성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한 강의당 10분 내외로 총 10개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 주요 내용은 가족 구성 형태 변화와 원인, 정부의 노력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 다양한 가족 소개 및 이해, 경기도민의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소개, 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혼인 및 혈연 구성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형제자매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www.gsee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 과정은 도민들이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는 가족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 충남에 세계 첫 ‘OLED 8.6세대 라인’ 구축

-충청남도(2023. 4. 4.)-

- 도,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협약,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 투자키로 -

-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용 오엘이디(OLED) 전용 라인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에 들어선다. 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도 등과 협약을 맺고, 4년 동안 민선 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충남 도지사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협약식’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아산시장, 에이치비테크놀로지 대표이사과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팀코리아 저력으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최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대통령과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 디스플레이산업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이번 협약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키로 하고,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 LCD 생산 능력이 급증한 중국이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IT용 OLED 사업화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T용 OLED는 LCD에 비해 얇고 가벼우며, 쉽게 구부러져 IT기기 설계 등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율 향상 및 공급망 안정화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설비업체에 대한 매출 1조 7000억 원 증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른 투자 및 생산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6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도와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 기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성능 평가 등에 협력하며, 소부장 기업 제품 경쟁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구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이와 함께 경영 안정 지원 상생펀드, 물품 대금 지원을 위한 물대지원펀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크레파스, 제조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 이날 협약식에서 충남 도지사는 “충남은 전 세계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국내 매출의 과반을 책임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라며 삼성의 이번 투자 결정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도지사는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충남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구축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 등 정부와 함께 확고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시대를 열어 나아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3. 강원도 청년창업 특별시대 연다!

-강원도(2023.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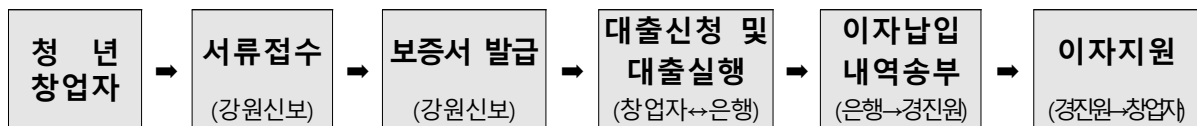
- 도, 4개 금융기관, 강원시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

○ 강원도와 4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은 3월 22일 KNU 스타트업 큐브에서 전국 최초, 전국 유일하게 시행되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강원도, 4개 금융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뜻을 모았다.

- 도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금융기관은 청년창업자금의 대출업무 및 출연금 지원을 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창업자 경영지도와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 신청절차



※ 사업공고 및 시작 : 4월 초(예정)

○ 또한 청년기술창업기업, 청년로컬벤처기업 대표 등 청년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과 공감·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전방안 등에 관해 미니소통을 진행했다.

○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창업을 원하지만 자금조달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는 도내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을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청년(만18세~39세)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

▲ 운용규모 100억 원, 최대 5천만 원, 5년간 무이자 대출(4개 은행)

▲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도내 주소의 청년 창업자 200명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 수료자

- 혁신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부담을 완화하여 도내 청년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강원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강원도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협약식’을 민선8기 새로운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 ‘새로운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취업쿠폰 확대와 신규 시책사업으로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청년포털 구축, 강원 맞춤형 청년통계 작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청년’이며, 청년들이 지역에 살고 싶게 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의 역할로,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창업하고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설치 추진

-전라남도(2023. 4. 14.)-

- 시기술 활용 학교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 대응 -

- 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2일(수)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능형영상감시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존 CCTV는 주로 사고 발생 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반면,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상황을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교내 폭력, 침입, 화재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해 알려준다.
-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위험의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지능형영상감시 시스템의 기능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 설명회에는 조달청 영상감시장치 우수조달물품 등록업체 중 희망업체 10곳이 참가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희망학교 관계자 23교, 70여 명이 참석했다.
- 도 안전복지과장은 “지능형영상감시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로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학교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의 안착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5. 전국 최초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 도입

-서울시교육청(2023. 4. 5.)-

-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식기류(식판, 수저 세트) 렌탈·세척 관리로 학교급식 현장 업무 경감, 산업재해 예방, 조리 업무 공백 해소 기대 -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식기류(식판, 수저) 렌탈·세척 운영 사업」을 관내 학교급식에 2023년 1학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이번 사업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식기류 렌탈·세척 관리는 학교 급식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다.
- 식기류 렌탈·세척 서비스는 학교가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 세트를 외부 전문업체에 빌려 사용하면, 외부업체는 사용한 식기를 매일 수거한 후 세척·살균하여 다시 학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 대상 학교는 서울시내 공·사립 학교 중 조리(실무)사 현원 부족 학교 가운데 1일 급식 횟수, 학교급, 급식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33교를 선정했고, 각 학교당 렌탈비로 2천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조리인력 부족에 따른 급식실 근무 여건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위생·안전의 위험 요소 최소화, 공간이 제한된 소규모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공공요금 절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에서도 조리인력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조리업무 공백을 해소하여 더 질 높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급식 현장의 업무 강도를 낮춤과 동시에 급식실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VIII.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자치분권위원회 운영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 황

-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4,800만원 감액된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2,832	3,233	3,149	2,585	△648	△20.0

□ 분석의견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이 2023년 3월 19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운영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기한은 2023년 3월 19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운영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점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 그러나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업무 추진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출장여비, 공공요금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다.

[2022~2023년도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내역	2022	2023
인건비(110목)	전문임기제 12명 공무직 5명 인건비	1,023	1,034
일반수용비(210-01)	회의참석수당, 안전사례검토비, 회의자료 발간 등	1,034	74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우편, 통신요금, TV 수신료	3	8
특근매식비(210-05)	구성원 특근매식비	29	29
임차료(210-07)	워크숍, 토론회를 위한 장소, 차량 임차료	84	77
유류비(210-08)	차량유류비	12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전산서버, 네트워크 유지비 등	75	69
복리후생비(210-12)	직원 선택적 복지, 생일 축하금	11	11
기타운영비(210-16)	과 운영비 등	31	31
여비(220목)	국내, 국외여비	126	113
사업추진비(240-02)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73	48
관서업무추진비(240-01)	위원장, 기획단 대외업무협의 등	37	36
직책수행경비(250-02)	구성원 월정직책금	125	12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이 2023년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와 신규 내역 사업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3년도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자치분권 정책연구(일반연구비, 260-01목) : 1억원 - 지방자치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과제(5,000만원) - 지방자치발전방안 연구용역 소과제(5,000만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일반수용비, 210-01목) : 3억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2억 5,000만원) - 지자체 특례심의위 운영(5,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2022.10.24.), 해당 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기한이 2023년 3월까지로 명시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 입법예고 단계인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이 자치분권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통과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해당 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즉시 폐지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최대 3개월간 존속하게 될 예정이므로,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또한, 법률안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기구로 통합되는 경우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기구의 운영예산은 법률상 별도 존속기한이 없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운영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와 및 그 사무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12개월분의 운영비 및 신규 연구과제·내역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분권위원회와 및 그 사무기구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 확보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국방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2023년 병 인건비 예산의 계급별 단가는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병과 일병의 봉급 차이는 8만원, 일병과 상병 12만원, 상병과 병장 20만원으로, 이병과 병장 간의 봉급 차이는 40만원의 차이가 난다.

[병사 계급간의 봉급 인상 차이]

(단위 : 천원)

구 분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2003	600	680(+80)	800(+120)	1,000(+200)

□ 분석의견

-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가 부사관 및 위관장교 등 군내 구성원의 계급 간 봉급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최근 5년간 이등병에서 병장 간 봉급 차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병 봉급을 100%로 봤을 때, 일병 108%, 상병 120%, 병장 133%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여 왔다.
 - 그런데 2023년의 경우 이병 봉급을 100%로 봤을 때, 일병 113%, 상병 133%, 병장 166%로 기존에 국방부가 유지했던 계급 간 봉급 차이 비율이 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

(단위: 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18	306,100(100)	331,300(108)	366,200(120)	405,700(133)
2019	306,100(100)	331,300(108)	366,200(120)	405,700(133)
2020	408,100(100)	441,700(108)	488,200(120)	540,900(133)
2021	459,100(100)	496,900(108)	549,200(120)	608,500(133)
2022	510,100(100)	552,100(108)	610,200(120)	676,100(133)
2023	600,000(100)	680,000(113)	800,000(133)	1,000,000(166)

자료: 국방부

- 게다가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과 2025년 이병과 병장 간의 봉급차이는 74%p로, 2023년의 66%p 보다 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급별 병사 봉급 인상계획안]

(단위: 천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	510(100)	552(108)	610(120)	676(133)
2023	600(100)	680(113)	800(133)	1,000(166)
2024	720(100)	800(111)	1,000(139)	1,250(174)
2025	864(100)	960(111)	1,200(139)	1,500(174)

자료: 국방부

- 반면,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의 기본급을 살펴보면, 부사관의 경우 2022년 기준 하사(1호봉) 170만원, 중사(1호봉) 179만원, 상사(1호봉) 222만원으로, 하사와 중사간의 기본급 차이는 5%p, 중사와 상사 25%p, 하사와 상사 30%p 차이가 난다.
- 위관급 장교의 경우 2022년 기준 소위(1호봉) 175만원, 중위(1호봉) 192만원, 대위(1호봉) 247만원으로, 소위와 중위 간의 기본급 차이는 9%p, 중위와 대위 32%p, 소위와 대위 41%p 차이가 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사관 및 위관 장교의 계급 간 차이가 약 40%p인 반면, 국방부의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서의 병사 간 봉급 차이는 약 70%p로 군 내 구성원 집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봉급 차이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군 간부의 기본급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부사관(2022년 기준)			위관장교(2022년 기준)		
	하 사	중 사	상 사	소 위	중 위	대 위
기본급	170.5 (100)	179.1 (105)	222 (130)	175.5 (100)	192 (109)	247.6 (141)

3. AI교육기반 조성 사업의 국고 지원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AI교육기반 조성은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의 내역사업으로, 현행 교과교육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적용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와 연계한 교수·학습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AI교육기반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1,639	2,042	2,042	3,052	1,010	49.5
AI교육기반 조성	0	0	0	500	500	순증

- AI교육기반 조성은 현행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적용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 현장 교원이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목별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생용 보조교재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2023년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개발비가 편성되었으며, 이후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년도 AI교육기반 조성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교과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개발 - (자료 개발) 교사용 교수·학습과정안 가이드라인 및 학생용 보조교재, 활동 워크북 등 대상별 자료개발 추진 ※ '22년 개발한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 기준 및 수업 예시 자료를 활용 - (대상 과목) [초등 1~2학년군]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초등 3~4학년군]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체육, 음악/미술, 영어 등 - (산출 내역) 125백만원 × 4종(초1~4학년) = 500백만원 - (단가 산출) [개발물량] 학년당 7개 내외 과목 × 과목당 10개 내외 콘텐츠 [개발 단가] × 2백만원 = 125백만원 - (콘텐츠 개발비) 전문가 활용비, 원고비, 회의비, 인쇄비, 기타 경비 등

자료: 교육부

□ 분석의견

- AI교육기반 조성은 초·중등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2년 1조 1,049억원에서 2023년 예산안에 1조 3,363억원으로 20.9%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3%의 6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사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소양 교육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교과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소양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가능하다.
- 또한, 교육부는 ‘AI교육기반 조성’ 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기반 마련 지원’ 을 2022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 마련 지원’ 은 2022년 국정과제 목표인 모든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내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교과와 연계한 교수·학습콘텐츠 양식을 개발(초1~고3)하는 것으로 2022년 4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이다.

[AI교육기반 조성(일반회계)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 마련 지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비교]

구분	AI교육기반 조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 마련 지원
재원	일반회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예산	2023(안) 5억원	2022년 4억원
사업내용	교과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개발 - 교사용 교수·학습과정안 가이드라인 및 학생용 보조교재, 활동 워크북 등 대상별 자료개발 추진	2022년 국정과제 목표인 모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①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내용기준을 구체화(교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연계 방향 설정, 실행 수준 구체화, 자료 개발 기준 마련 등)하고 ② 교과와 연계한 교수·학습콘텐츠 양식을 개발(초1~고3)
추진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출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자료: 교육부

- 따라서 AI교육기반 조성은 초·중·등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정책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 특별교부금은 2022년 1조 1,049억원에서 2023년 예산안에 1조 3,363억원으로 20.9%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X.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3.)-

□ 감사배경 및 목적

- 감사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훈령)에 따라 감사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처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2022. 8. 29. 한국방송공사가 경상북도 도내 각급 학교의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실태를 조사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기간에 대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최대 5년분)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감사제보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는 접수된 감사제보 내용에 따라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최대5년분)를 부과·징수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국방송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2022. 10. 12.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자료수집을 하면서 제보내용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각 지역교육청을 방문 조사하는 등으로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그 결과 한국방송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지 시점부터 시작하여 미등록기간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소급(최대 5년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한국방송공사에서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부과·징수한 경위 및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22. 11. 2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5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한국방송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22. 11. 29. 서면으로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후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2. 23.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구분	합계	주의	통보
건수	2	1	1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 「방송법」(제64조,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대해 「방송법」해석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처는 수상기 미등록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고, 「방송법」상 추징금 부과만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11년/2020년)
-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위 법령해석과 상반되게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최초 수상기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의 수신료(최대 5년분)를 그간 계속해서 부과·징수
 - ※ 2011년 이후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한 총징수액은 2,394백만 원, 「방송법」상 추징금(1년분의 수신료)을 초과한 금액은 762백만 원

- 이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 「방송법」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추징금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한 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환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추징금을 초과하여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